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02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이성윤 · 김한규 · 김의겸
서영교 · 박지원 · 김남희
김용민 · 박균택 · 김동아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고등검찰청”을 “광역공소청”으로,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을 “고등검찰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광역공소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나 군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u>고등검찰청</u> 이나 그 군검사 소속의 <u>고등검찰부</u> 에 대응하는 <u>고등법원</u> 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 ----- ----- ----- ----- <u>광역공소청</u> ----- <u>고등검찰부</u> 소재지를 관할하는 <u>지방법원 본원 합의부</u> ----- -----. ② (현행과 같음)